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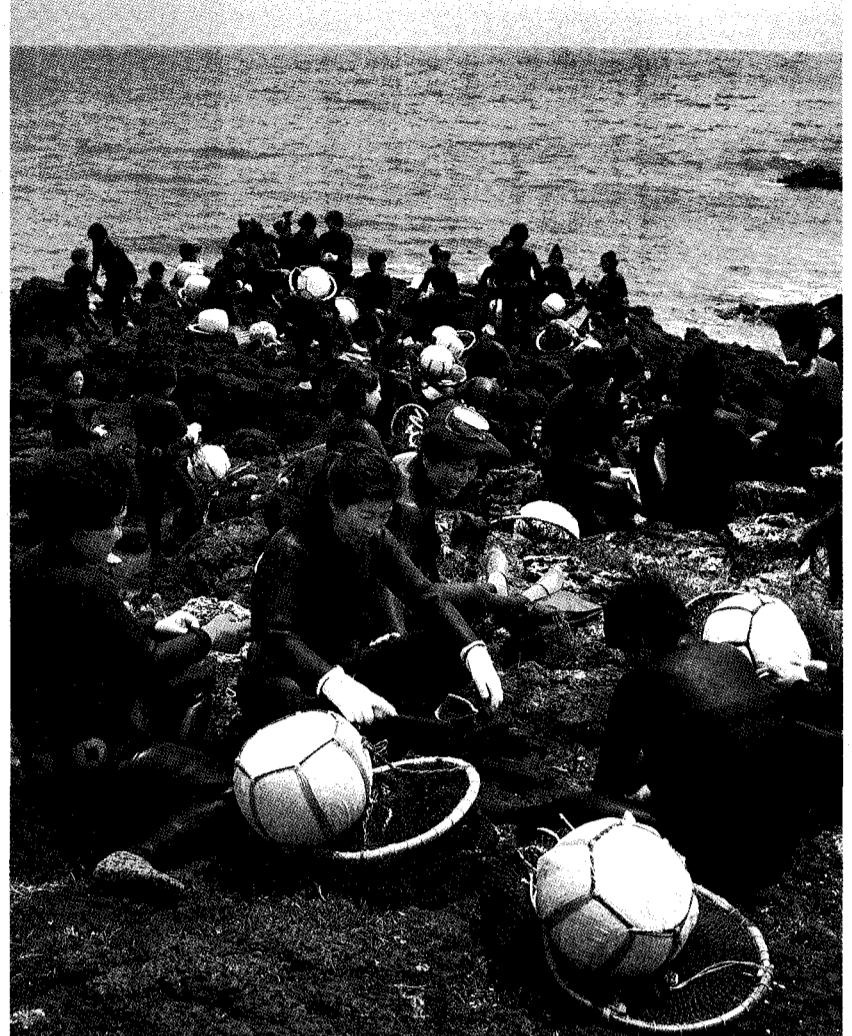
# 金賞 휴식 장효령씨 · 銀賞 작업 한순애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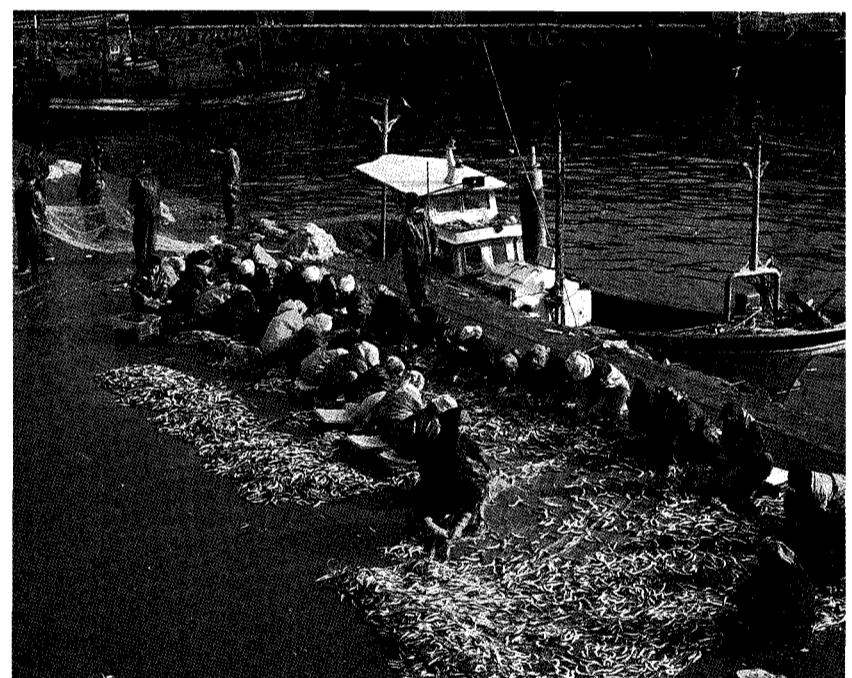
# 漁港漁村사진入賞作발표

모두 600여점 應募… 60點 선정, 9月2~3日 수산청서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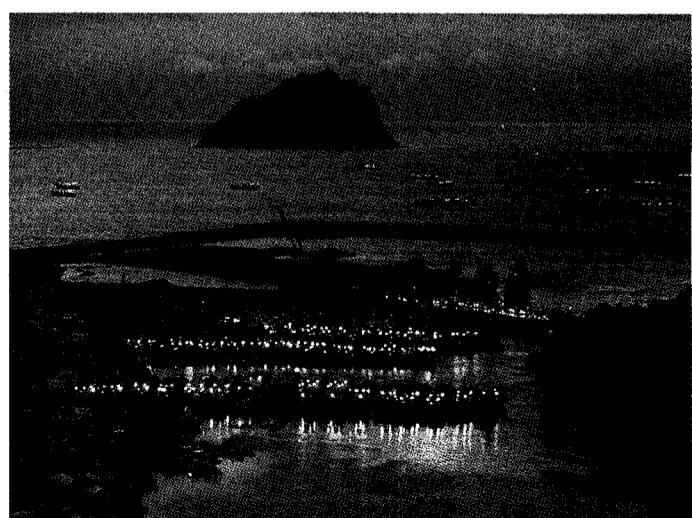
## 入選作 이상에 「한국寫協」 入會點數 인정



금상 : 「휴식」 장효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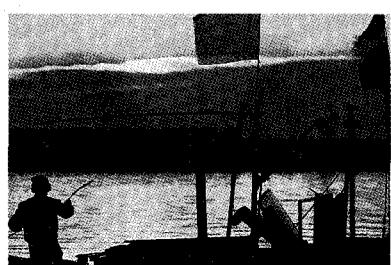
은상 : 「작업」 한순애



동상 : 「야항」 박완호



동상 : 「미조항풍경」 박문찬



가작 : 「어부의 노래」 조경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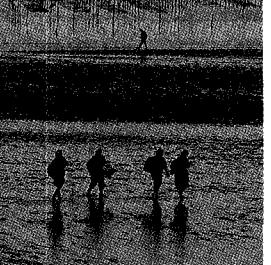
가작 : 「어획」 노명섭



가작 : 「공동작업」 박용신



가작 : 「어촌의 정경」 황상진



가작 : 「희망의 바다로」 신정의



시공실무

# 예산회계법령 개정내용

재무부는 지난 '93. 12. 31 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준속기간을 종전 5년 이내에서 민법규정을 준용하여

최장 10년까지 정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전문감리회사가 공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공사근거를 명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예산

회계법을 개정시행한데 이어, '93. 12. 30 입법예고했던 예산회계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295호 '94. 6. 30)과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특례규정(대통령령 제14288호 '94. 6. 25)을 각각 공포·시행하였으며 하위규정인 계약사무처리규칙(재무부령 제1995호) 및 관련 회

계예규를 '94. 7. 20자로 개정·시행하였는바, 개정내용 중 건설공사와 관련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한다.〈편집자주〉

##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내용

### 1. 공사의 분할계약금지제도 개선(제70조)

동일구조물사공사 및 단일공사는 시기적으로 또는 공사량으로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는 원칙규정은 그대로 존치되며,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일괄계약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사는 분할발주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였다.

종전에 동일구조물공사(기능이 상호연결된 일체식 구조물을 건설하는 공사) 및 단일공사(예산상 단일사업으로 계상되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며,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함이 없이 일괄하여 계약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예규「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집행요령」에서 분할계약이 가능한 경우로,

① 기본계획서나 설계서 등에 의하여 공구별로 분할 계획된 공사로서 이행기간, 성질,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일괄발주가 부적합하다고 인

정되는 도로, 하천, 지하철공사 등 10개 공종공사

#### ② 건설업법상 특수공사중 조경공사

③ 다른 법률에 의해 분할발주도록 규정되어 있는 전기공사 등을 열거하고 있었던 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분할금지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분할발주할 수 있는 경우를 시행령에 단서로 격상시켜 ①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② 공사의 규모등에 비추어 공구별로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③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 한정하였다.

이에따라 분할발주를 할 수 있는 공사를 예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교실신축공사 동시에 시공되는 방음벽 설치공사(공간적으로 중복되지 아니함) ② 아파트 신축후 소방설비공사(시간적으로 중복되지 아니함)

### 2.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근거신설(제74조, 부칙제2조)

공동계약으로 집행하는 공사의

경우 건설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직할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중 1인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활성화 조항이 신설되었다. 다만, 동 내용은 정부조달시장개방과 관련 '96. 12. 31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동 규정의 신설에 따라 앞으로 공동도급공사의 입찰공고시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을 명시하는 이외에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조건으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지역소재업체를 1인이상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 3. 재무상태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실시근거 마련(제90조 제1항 제8호 신설)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

무상태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한사항을 추가 신설하였다.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동일공사설, 도급한도액 또는 기술보유상황 등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입찰검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여기에 추가하여 재무상태로도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4. 선금 및 대가지급 기한의 단축(제56조 제2항, 제117조)

선금지급기한은 종전에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지급토록 한 것을 14일이내에 지급토록 그 기한을 6일 단축하였다.

또한 공사준공금은 종전에 검사완료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지급토록 한 것을 14일이내에 지급토록 하였으며,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2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특약기간도 역시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단축하였다.

그리고 기성대가지급기한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서 7일이내로 개선하였다.

### 5. 전문기관의 감독 및 검사직무의 겸직대상공사명시(제114조 제6항, 제116조 제4호 신설)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약과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발주관서공무원이 감독을 할 수 없는 제조, 기타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6. 예산이월 가능공사 확대(제19조 제1항 신설)

입찰공고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이 소요되는 부대입찰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대상공사, 대안입찰 및 설계·시공일괄 입찰공사는 당해 회계년도내에 입찰공고를 하였으면 지출원인행위인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한 경우도 다음해로 이월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회계예규 개정내용

###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조정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중 심사분야별 배점한도가 종전에는 시공경험 40점, 기술능력 40점, 경영상태 20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시공경험은 30점으로 상향조정하고, 경영상태는 30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기술능력 40점은 불변) 이렇게 조정한 이유는 시공경험의 비중을 다소 낮추고 경영상태 비중을 높여 중소건설업체들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참가가 비교적 용이하도록 완화한 것이다.

이와함께 각 발주기관이 공사의 성질·내용등을 고려하여 각 분야별, 항목별 배점한도를 가감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종전 10% 이내에서 20% 이내로 상향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하였다.

### 나. 시공증인 실적인정

종전에는 공사실적은 모두 준공실적만을 인정하여 왔으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대상 공종공사에 시공경험을 가진 업체가 제한되어 있어 현재 시공증인 공사도 시공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동종공사로서 당해 전체공사의 예정공정표상 50%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성검사를 필한 후 발주관서의 장으로부터 기성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 다. 신인도 세부심사항목의 추가

신인도 심사분야(±10점)에 있어 종전에는 세부심사항목을 우수시공

업자로 지정된 자 등 5개항목을 두었으나, 이번 개정시 그밖에 6개 항목을 다음과 같이 새롭게 추가하였으며 대부분 마이너스(−)인 감정항목을 추가하여 신인도 심사를 대폭 강화하였다.

① 최근 3년동안 건설업법에서 정한 과태료 처분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4)

② 최근 1년동안 하도급계약 미흡 또는 불공정하도급거래로 처벌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3)

③ 최근 1년동안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과태료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3)

④ 최근 1년동안 당해기관이 실시한 공사입찰,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질서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2)

⑤ 기타 건설부장관이 정한 「건설업체의 부실벌점기준」에 해당되는 자(-3)

⑥ ISO국제품질 인증을 받은 자(+1)

### 2. 공사입찰유의서

#### 가. 입찰무효사유 내용추가

총액단가입찰로 집행되는 공사에 있어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을 무효사유에 추가하였다. 이는 감사원의 건설공사입찰에 대한 감사시 입찰서에 첨부된 산출내역서가 단지 일반관리비나 이윤금액만 다르게 되어있을 뿐 다른 부분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된 입찰서가 많은 것이 발견되어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입찰무효사유에 추가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타인의 산출내

#### 나. 계약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의무삭제

종전에는 국가 등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에 필요한 관계서류외에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였으나 '93. 12. 31 국세징수법(제5조 제1호) 개정으로 대금을 지급받을 때에만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한 것이다.

### 3. 공사계약 일반조건

#### 가. 대가지급기한 단축

검사에 합격되어 계약자로부터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준공대가는 종전 20일이내에서 14일이내로(20일이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기간도 14일이내로) 단축되었고, 기성대가 지급기간도 14일이내에서 7일이내로 대폭 축소되었다.

이는 계약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개선된 것이다.

#### 나. 하자보수착공신고서 제출의무신설

계약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통보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공사이행 소요기간을 명시하고 설계서를 첨부한 하자보수착공신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다만, 시급을 요하는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에 착공하여야 한다. 이는 발주기관이 하자보수요구를 한 경우 계약자가 하자보수공사를 미루는 사례가 있어 하자보수이행 절차를 명확히 한 것이다.

### 4. 제한경쟁계약 운용요령

#### 가. 재무상태로 제한할 경우의 세부기준명시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로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도록 예산회계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무상태에 의한 제한경쟁의 집행상 혼란을 막고자 회계예규에서 그 기준을 명시하였다. "재무상태"라는 현재 부도상태에 있거나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부도상태나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지 아니한 자들로 제한경쟁입찰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5. 공사의 수의계약 운용요령

#### 가. 수의계약 집행기준 개선

특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종전에는 ①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는 금차공사가 전차공사와 수직적기초를 공통으로 할 때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로서, 전차공사의 규모가 금차공사규모의 25%이상인 때 ② 동일현장에 2인이상의 업자를 투입할 수 있는 경우는 금차공사가 시공과정상 다른 공사와 시간적·공간적으로 25%이상 중복되는 때 ③ 마감공사의 경우는 기시공물의 뒷

마무리공사와 성토, 용벽, 포장 등의 부대시설공사로서 주된 공사규모의 10%이내인 공사로 세부기준을 명시하고 있던 비율을 삭제하였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발주기관이 공사규모, 성질 또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사의 특성에 따라 수의계약여부를 결정,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나. 수의계약체결시 낙찰률 적용특례규정신설

계속공사의 수의계약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종전에는 당해 수의계약 대상공사의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하로만 계약체결로 되어 있던 것을 당해 수의계약대상공사가 제한적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인 경우에는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상으로 계약체결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하였다.

### 6.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선금 및 대가 등을 지급할 때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금을 수령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도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7. 선금지급요령

선금지급기한단축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할 경우 종전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지급토록 하였으나 이를 14일이내로 지급토록 개선하였다.